

- 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
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2014. 7.

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

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의안	
번호	

제안일자 : 2014. 7. .
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한다. (2014. 9. 12 ~ 9. 20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(7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2280호, 2014. 1. 21)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5367호, 2014. 7. 1) 제39조 ~ 제50조, 제5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

2. 감사기간

○ 2014. 9. 12(금) ~ 9. 20(토) [9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부서)

○ 마포구의회사무국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운 영 위원회	[위원장] 김 영 미 [위원] 김 윤 정, 문 정 애 신 종 갑, 유 호 렬 이 학 래, 허 정 행	마포구의회 사 무 국	운 영 위원회실	김은모	노영구

5. 감사일정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비 단계	2014. 7. 8(화)	○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	
	7. 9(수)	○ 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 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작성	
	7.10(목)	○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 감사계획 통보	
	~ 8.22(금)	○ 행정감사 요구 목록 수합	
	~ 8.29(금)	○ 감사관계 자료 수합	
	~ 9.11(목)	○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 단계	2014. 9.12(금) ~ 9.20(토)	○ 위원장의 감사선언 ○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-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 감사종료 선언	
감처사리결단과제	2014. 9.21(일) ~ 10.2(목)	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○ 감사결과 보고 (본회의) ○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	

6. 감사요령

- 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행정사항

-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-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